

2025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계획



2025. 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목 차



I. 추진 개요	1
II. 2024년 추진 실적	2
III. 주요 변경 사항	2
IV. 세부 추진 계획	3
1. 지원 개요	3
2. 항목별 지원 내용	4
3. 소요 예산	5
4. 처리 절차	6
5. 교육급여 자격변동	7
6. 개인정보 보호 및 반환명령	9
7. 현장방문 접수처 운영	10
V. 연간 일정 및 기타 사항	11
서식 1. 교육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13
2. 교육급여 중지 요청서	14
참고 1. 무상교육제외교 명단	15

2025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계획(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 학생																			
사용 범위	· 교육활동지원비 - 다양한 교육목적 사용가능(유흥·사행 비교육 업종 외 사용가능)																			
주요 변경 사항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																			
	<table><tr><th>연도</th><th>2024년</th><th>2025년</th><th>비고</th></tr><tr><td>기준</td><td></td><td></td><td></td></tr><tr><td>기준 중위소득(50%) (4인가구 기준)</td><td>- 286만원</td><td>- 305만원</td><td>6.6% 인상</td></tr><tr><td>지원단가</td><td>▶ (초) 461,000원 ▶ (중) 654,000원 ▶ (고) 727,000원</td><td>▶ (초) 487,000원 ▶ (중) 679,000원 ▶ (고) 768,000원</td><td>5% 인상</td></tr></table>				연도	2024년	2025년	비고	기준				기준 중위소득(50%) (4인가구 기준)	- 286만원	- 305만원	6.6% 인상	지원단가	▶ (초) 461,000원 ▶ (중) 654,000원 ▶ (고) 727,000원	▶ (초) 487,000원 ▶ (중) 679,000원 ▶ (고) 768,000원	5% 인상
	연도	2024년	2025년	비고																
	기준																			
	기준 중위소득(50%) (4인가구 기준)	- 286만원	- 305만원	6.6% 인상																
	지원단가	▶ (초) 461,000원 ▶ (중) 654,000원 ▶ (고) 727,000원	▶ (초) 487,000원 ▶ (중) 679,000원 ▶ (고) 768,000원	5% 인상																
	교육급여 사업기간 조정																			
	<table><tr><td>교육급여 신청</td><td>▶ '25.3.</td><td>'25.12. ◀</td><td>(기존) 당해연도 3월 ~ 차년도 2월 (향후) 당해연도 3월 ~ 12월</td></tr><tr><td>바우처 신청</td><td>▶ '25.4.</td><td>'26.2. ◀</td><td>(기존)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6월 (향후)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2월</td></tr><tr><td>바우처 사용</td><td>▶ '25.4.</td><td>'26.3. ◀</td><td>(기존)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8월 (향후)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3월</td></tr></table>				교육급여 신청	▶ '25.3.	'25.12. ◀	(기존) 당해연도 3월 ~ 차년도 2월 (향후) 당해연도 3월 ~ 12월	바우처 신청	▶ '25.4.	'26.2. ◀	(기존)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6월 (향후)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2월	바우처 사용	▶ '25.4.	'26.3. ◀	(기존)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8월 (향후)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3월				
	교육급여 신청	▶ '25.3.	'25.12. ◀	(기존) 당해연도 3월 ~ 차년도 2월 (향후) 당해연도 3월 ~ 12월																
	바우처 신청	▶ '25.4.	'26.2. ◀	(기존)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6월 (향후)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2월																
바우처 사용	▶ '25.4.	'26.3. ◀	(기존)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8월 (향후)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3월																	
※ 연도별 교육급여 신청 및 사용기간 중복 최소화를 위해 기간 단축																				
무상교육제외교(사립 19교) 학비지원 업무처리 사항 변경																				
<table><tr><th>연도</th><th>2024년</th><th>2025년</th><th>비고</th></tr><tr><td>구분</td><td></td><td></td><td></td></tr><tr><td>계획 및 예산 수립</td><td>도교육청</td><td>도교육청</td><td>현행유지</td></tr><tr><td>(학교)교부 및 집행관리</td><td>도교육청</td><td>교육지원청</td><td>고등학교 업무이관</td></tr></table>				연도	2024년	2025년	비고	구분				계획 및 예산 수립	도교육청	도교육청	현행유지	(학교)교부 및 집행관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업무이관	
연도	2024년	2025년	비고																	
구분																				
계획 및 예산 수립	도교육청	도교육청	현행유지																	
(학교)교부 및 집행관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업무이관																	
신청 방법	· 교육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수급자격 신청(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및 교육비원클릭) 신청) - 바우처 신청(온라인 신청, e-voucher.kosaf.go.kr)																			

2025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계획(안)

- 교육급여는 2015. 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체제가 도입되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운영
- 국고보조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 예산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¹⁾ 50%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

I 추진 개요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 「교육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 목적

-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이념 실현

□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반영
- (타 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우선함
-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1)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II

2024년 추진 실적

□ 교육활동지원비 및 무상교육제외교 학비 지원

(단위: 명, 천원)

지원항목	지원인원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 65,630명 (초 26,908명, 중 18,943명, 고·특수 19,779명)	38,940,000
무상교육제외교 학비	- 342명 (무상교육제외교 (사립19교): 중 17명, 고 325명)	2,088,000

□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홍보자료 배포(포스터 및 리플릿)

○ 학교·교육지원청(2,559개 기관) 및 읍면동사무소·시군구청(648개 기관)

III

주요 변경 사항

□ 교육활동지원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원, %)

연도 기준	2024년	2025년	비고
2인	1,841,305	1,966,329	+ 7.1%
4인	2,864,957	3,048,887	+ 6.6%
6인	3,809,185	4,032,403	+ 5.8%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단가

(단위: 원)

연도 급별	2024년	2025년	비고
초	461,000	487,000	+ 26,000
중	654,000	679,000	+ 25,000
고	727,000	768,000	+ 41,000

□ 교육급여 사업기간 조정

【 교육급여 사업기간 조정 】

교육급여 신청	▶ '25.3.	'25.12. ◀	(기존) 당해연도 3월 ~ 차년도 2월 (향후) 당해연도 3월 ~ 12월
바우처 신청	▶ '25.4.	'26.2. ◀	(기존)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6월 (향후)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2월
바우처 사용	▶ '25.4.	'26.3. ◀	(기존)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8월 (향후)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3월

※ 연도별 교육급여 신청 및 사용 중복 최소화를 위해 기간 단축
(기존 2023~2024년 교육급여 사업기간 대비 평균 5개월 단축)

□ 무상교육제외교(사립 19교) 학비지원 업무처리 사항 변경

기준 \ 연도	2024년	2025년	비고
계획 및 예산 수립	도교육청	도교육청	현행유지
(학교)교부 및 관리·운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업무이관

IV 세부 추진 계획

1.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국립·공립·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학생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 지원 내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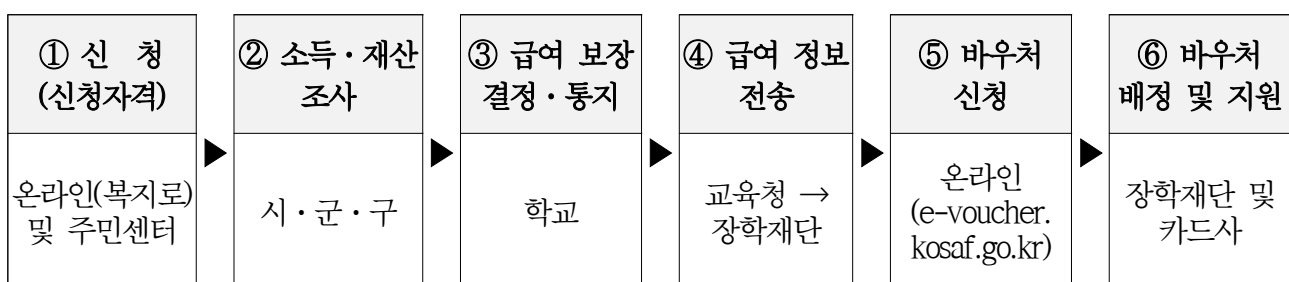
지원항목		구분	1인당 지급액	방법
교육활동지원비		초	487,000	연 1회 (바우처)
		중	679,000	
		고	768,000	
무상교육제외교 학비	입학금	무상교육 제외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입학 시 1회
	수업료			연 4회
	교과서대		해당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비	연 1회

※ 무상교육제외교(사립19교): 자사고(2), 특수목적고(9), 특성화고(2), 각종학교(5), 특성화중(1)

2. 항목별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지급 내용: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지원금액 바우처 지급
- 지급 수단: 수급권자가 보유한 카드 등에 포인트 지급
- 지급 절차



- 사 용 처: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등의
사용만을 제한하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
- 신청기간: 2025. 4. 1. ~ 2026. 2. 28.
- 사용기간: 2025. 4. 1.(바우처 배정일) ~ 2026. 3. 31.

○ 신청방법

- 신청자격 신청: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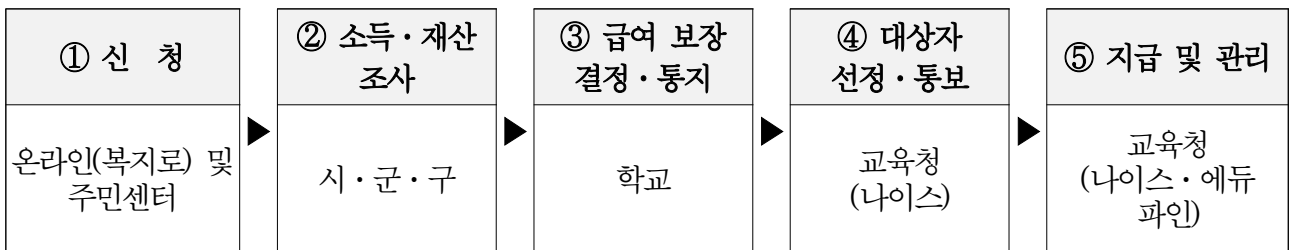
- 바우처 신청: 온라인, e-voucher.kosaf.go.kr

□ 무상교육제외교 학비

- 지급 내용: 무상교육제외교에 재학하는 수급대상 학생의 학비

- 지급 수단: 무상교육제외교에 직접 교부

- 지급 절차



3. 소요 예산

(단위: 명, 천원)

예산 편성 현황				재원 분담 현황			
지원항목	대상	인원	예산액	합계	국고	도청 및 시·군청	교육청
교육활동 지원비	초	28,726	13,989,562	47,038,843	33,454,736	4,601,635	8,982,472
	중	20,782	14,110,978				
	고	20,987	16,118,016				
	소계	70,495	44,218,556				
학비	무상교육 제외교	430	2,820,287				

4. 처리 절차

□ (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를 시·군·구에서 전송받아, 학적을 확인하여 보장결정 후 즉시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부적합) 통지서’ 서면 통지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판정결과(적합/부적합)를 기반으로 대상자 명단이 생성되며 판정결과를 임의로 학교(교육청)에서 임의로 변경 불가

○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중복 지급 방지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자격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갖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학용품비 수령 여부를 확인
-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학용품비를 받을 경우, 차액만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시·군·구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중·고 자녀에게 연 9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무상교육제외교는 나이스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입력 필요

< 대상별 입력 시기 및 생성일 >

구 분	입력 시기	생성일
지급액 생성	전월 16일 ~ 당월 15일	16일 00시
과오지급 수정금액 생성	전월 21일 ~ 당월 20일	20일
지급오류처리 생성	당월 1일 ~ 당월 말일	말일(12월은 25일)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 불가(단,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액 지원)

○ 학적변동 관리 및 중복지원 방지(매월 15일까지)

- 학적 변동사항(전출, 자퇴 등)에 따른 나이스시스템 반영 및 관리
- 소득인정액 등 변동내역에 관한 사항은 매월 자동반영
-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의 기 지원 내역 및 면제여부 확인

※ 이중지원 금지: 입학금(최초 1회 지급), 교과서대(지원받은 경우 재입학을 하더라도 미지원)

□ (교육청) 급여자료의 생성 및 지급의뢰 및 학비 교부

- 교육급여 자료 생성: 매월 16일 00시(=15일 24시)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무상교육제외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 지급의뢰: 한국장학재단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생성인원 지급의뢰
- 학비교부: 무상교육제외교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교부

□ (학교) 무상교육제외교 학비 징수 및 수납

- 교육청에서 교부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를 나이스에듀파인 연계를 통해 처리

5. 교육급여 자격변동

□ 전·입학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교과서대
 - 급여자료 생성일 기준으로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지급
 - 보장기관 변경으로 인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음
- 수업료
 - 급여자료 생성일 기준으로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지급
-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전입학교에서 전입일로부터 지원
 - ※ 예외: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시·도 학교 간 전출시에는 월할 계산

< 전출입, 학적 변동에 따른 지원 방법 >

구 분	지원 방법	세부 내용
전출입	일할계산(원칙)	- 전출교는 전출일이 속하는 날까지 지원 - 전입교는 전입일이 속하는 날부터 지원 ※ 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
	월할계산(예외)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시도 전출입	- 전출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전입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원
재입학, 편입학	일할계산	-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지원
휴학 후 복학	일할계산	-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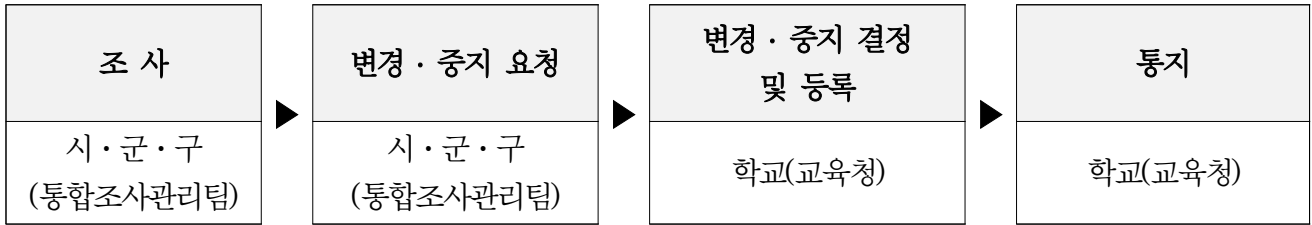
□ 상급학교 진학

-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1 ~ 2월 보장 결정된 수급자의 경우, 보장 결정 당시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
 - 보장 결정 없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상급학교에 학적이 형성된 경우, 상급학교에서 보장 결정하고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학적이 정비되기 이전이라도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를 미리 감면하여 수급자의 편의 도모
- 재학 중 신청하였으나 졸업 이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전송된 경우, 학교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공문으로 송부하면 도교육청에서 지급

□ 자격중지

- 중지사유(급여가 필요없게 되거나 급여를 거부한 경우)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때
 - 교육급여 대상자의 휴학 · 자퇴 · 퇴학 · 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없음’을 확인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중지시기
 - (일반) 사유 발생일 또는 급여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급여 지급 중지**
 - ※ 수급자증명서는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부터 발급 불가
 - (학적 변동) 교육급여 대상자가 휴학 · 자퇴 · 퇴학 · 제적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다음날부터 교육급여 수급 자격 및 지급 중지**
- 중지절차
 - 나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
 - 졸업 또는 학업중단으로 인해 자격 중지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을 안내

< 급여 변경 · 중지 절차 >



○ 자격중지 시 정산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 교과서대: 중지일 이전의 급여지급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반납받지 않음)

※ 단, 신청 시부터 부정수급인 경우 전액 환수

- 수업료: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중지

6. 개인정보 보호 및 반환명령

□ 개인정보 보호

- 교육급여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 점검 실시
-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반 조치 수행
 - 교직원 연수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 · 보완
 - 업무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관리 철저
 -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학생에게는 정보제공 금지)
- 학생이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교육급여 지원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담임교사 포함)이 단순히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장 추천 지원, 장학금 추천, 학생 생활지도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 승인 후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열람 가능

□ 반환명령

○ 부당이득 반환 소멸시효

-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소멸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민사상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 민사상 부당 이득 반환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소송비용과 기대이득의 비교 필요

< 부정수급 및 과오수급 유형 >

부정수급	허위 신고(신청)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출생·사망) 미신고, 축소 신고
	목적 외 사용 (제3자, 시설장 등)	급여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과오수급 (반환명령)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신고내용 누락 포함)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급여 지급
	행정 시차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급여 오지급
	사정 변경	급여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급여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 타	그 외 수급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정적 지급

7. 현장방문 접수처 운영

□ 운영 개요: 온라인으로 한정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식을 보완하고자
본청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현장방문 접수처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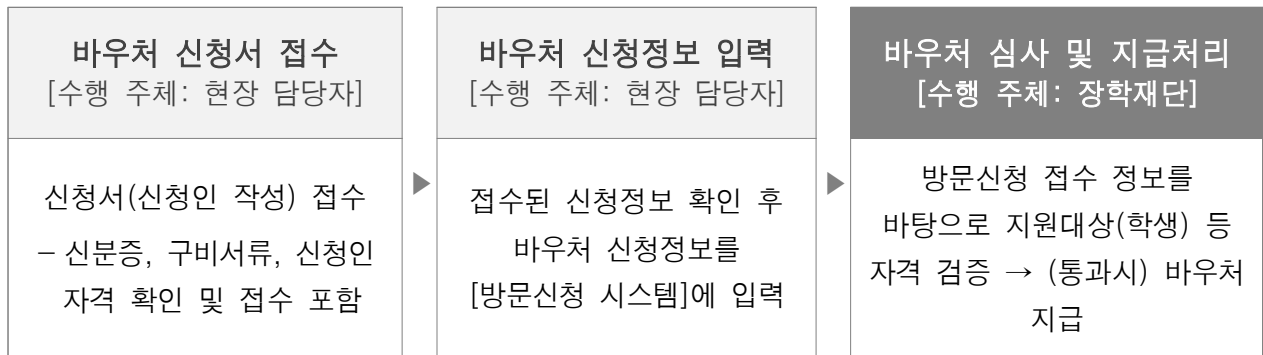
□ 운영 기간: 2025. 1월 ~ 2025. 6월

□ 접수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신청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처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방문 전 반드시 해당 접수처 담당자와 사전통화)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 지원 절차



V 연간 일정 및 기타 사항

□ 연간 일정

추진 일정	추진 내용	비 고
2025. 2.	교육급여 지원 계획 수립	
2025. 3.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2025. 7. ~ 9.	교육급여 지방비 편성내역 통보	교육부 내시에 따름
2025. 12.	교육급여 유공자 표창	훈격: 교육감

○ 월별 추진 사항

- 보장결정 미처리건 처리 현황 확인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대상자 생성 및 한국장학재단 통보

○ 분기별 추진 사항

- 무상교육제외교 학비 지급

○ 연중 추진 사항

- 신규수급자 발굴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 표창 계획

- 표창명: 교육급여 및 교육비 유공 표창
- 훈격: 교육감
- 시기: 2025. 12월
- 내용: 교육급여 및 교육비 업무 유공
- 대상: 일반직 및 교원, 교육공무직원

□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25. 3. 4.(화) ~ 2025. 3. 21.(금)
-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과 교육급여 사업을 연계 홍보하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도록 유도
-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배포
(교육청 및 각급학교) 가정통신문 안내 및 포스터·현수막 제작 등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31개 시군을 통한 홍보자료 배포

서식1 교육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교육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대상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예금주	성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동의 ☐ 거부 ☐				
본교 및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육 급여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 목적: 교육급여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본교 재학 기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 행사 시 급여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1.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급여를 받으실 통장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과 예금주는 대상학생을 포함하여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부모, 형제, 자매, 같이 사는 조부모 등)만 가능합니다. 3. 급여계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계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급여는 본교에 등록된 학생의 스쿨뱅킹 계좌나 CMS 계좌로 입금됩니다. 4. 매달 15일 이후에 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번 급여부터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00 학교장 귀하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2 교육급여 중지 요청서

교육급여 () / 교육비 () 중지 요청서				
신청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대상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확 인 사 항				
<지원항목> ■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 ☐ 교육비: ☐ 고교학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급식비, ☐ 교육정보화비, ☐ 기타 교육비() 1. 해당 중지 요청은 학생 본인, 부모와 형제 등 가구원이 가능합니다. ※ 중지를 요청하는 사람은 성인(19세 이상)만 가능 2. 교육급여와 교육비 일부 항목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로 신청하시면 다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항목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대상학생(본인의 ____)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00 학교장 귀하 / 00읍면동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참고1	무상교육제외교 명단(19교, 특성화중 포함)
------------	---------------------------------

연번	지역	유형	학교명	제외사유
1	가평(3)	특성화중	청심국제중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2		특수목적고	청심국제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3		각종학교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4	고양(3)	특수목적고	고양예술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5		특수목적고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6		각종학교	광성드림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7	김포(1)	특수목적고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8	안양과천(3)	특수목적고	과천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9		특수목적고	안양예술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10		특수목적고	안양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11	성남(1)	특수목적고	계원예술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12	시흥(1)	특성화고	한국조리과학 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13	안산(2)	자율형 사립고	안산동산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14		특성화고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15	동두천 양주(1)	각종학교	쉐마글로벌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16	연천(1)	각종학교	화요일아침예술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17	용인(2)	자율형 사립고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18		각종학교	중앙예뵤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19	군포의왕 (1)	특수목적고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금 · 수업료를 결정
계	19교			